

「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,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인재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면학 환경을 조성하여 구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어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‘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’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출연 개요
 - 출연기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* 서울 구미학숙 운영기관
 - 출연금액 : 150백만원(운영예산)
- 사업 개요
 - 사 업 명 :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(동선동2가)
- 사업기간 : 2025년 1월 ~ 12월
- 사업내용 : 서울 구미학숙 운영을 위한 인건비, 운영비 등 지원
- 운영예산 : 430백만원(출연금 150, 입사생수입 170, 전기 이월금 110)

○ 출연의 필요성

- 학숙 입사생들에게 쾌적한 주거·면학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
- 인건비, 운영비(식재료비, 공공요금) 등 학숙 운영 소요예산 총당 및 안정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출연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에 장학기금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,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 구미학숙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구미장학재단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과 학숙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,
- 서울 구미학숙 입사생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, 멘토사업 등 구미학숙을 이용하는 입사생의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학금 지원, 인턴십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